

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67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7월 13일

발 의 자 : 서윤기, 김동식, 박기재, 정진철,
김기대, 김제리, 봉양순, 임만균,
정재용, 임종국, 양민규, 이정인,
유정희, 박기열, 오현정, 전병주,
이상훈, 김화숙, 황인구, 장상기,
오중석, 최 선, 채인묵, 장인홍,
이태성, 추승우, 이동현, 전석기,
노식래, 노승재, 김경영, 김희걸,
권순선, 문병훈, 김수규, 김광수,
유 용, 송도호, 최영주, 문장길,
최정순, 홍성룡, 김경우 의원(43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입장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제4항).
- 나. 이용자의 사용 및 금지의 제한규정을 변경함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자는”를 “사람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반환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
-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연회비 및 입장료등의 징수)</p> <p>① 서울상상나라의 체험전시물, 프로그램 및 공연장을 사용하려는 <u>자</u>는 입장료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5조(연회비 및 입장료등의 징수)</p> <p>① ----- ----- <u>사람은</u>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반환한다.</u></p>
<p>제7조(사용의 금지 및 제한) ① (생략)</p> <p>1. <u>술에 취한 자</u></p> <p>2. <u>위험물이나 악취,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자</u></p> <p>3. <u>반려동물을 동반한 자</u></p> <p>4. 그 밖에 체험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<u>자</u></p>	<p>제7조(사용의 금지 및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</u></p> <p><삭제></p> <p>3. ----- <u>사람</u>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</p>